

## 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41호

##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2-150호(2022.4.7.)로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’ 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3동 754번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예정 지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제1항에 따라 ‘주택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.

2024년 7월 11일  
서울특별시 장

## 1. 대상지 (변경)

| 구분 | 자치구명 | 명칭(가칭)     | 위치               | 면적(㎡)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정 | 은평구  | 응암동 700 일대 |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일대 | 46,006 | · 주택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 면적 변경 |
|    |      | 응암동 755 일대 | 은평구 응암동 755번지 일대 | 47,356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변경 | 은평구  | 응암동 700 일대 |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일대 | 55,942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| 응암동 755 일대 | 은평구 응암동 755번지 일대 | 56,916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. 권리산정기준일 (변경)

| 구분 | 위치               | 권리산정기준일          | 면적(㎡)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정 |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일대 | 2022.4.4.        | 46,006 | · 기존 구역 중 응암동 755번지 일대 일부 필지 제척으로 인한 기존구역 면적 변경 (감 232.0㎡)<br>·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|
|    | 은평구 응암동 755번지 일대 |                  | 47,356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변경 |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일대 | 2022.4.4.(기존구역)  | 46,006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| 2024.4.25.(추가구역) | 9,936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은평구 응암동 755번지 일대 | 2022.4.4.(기존구역)  | 47,124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| 2024.4.25.(추가구역) | 9,792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3. 지정사유 (변경없음)

- 정비구역 지정·고시 전에 투기세력 등의 유입 사전 차단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 피해 최소화

## 4.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(변경없음)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36조제2항 규정에 따름
- 단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(추가 편입 필지 포함)에 한해 적용하되,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권리산정기준일 자동 실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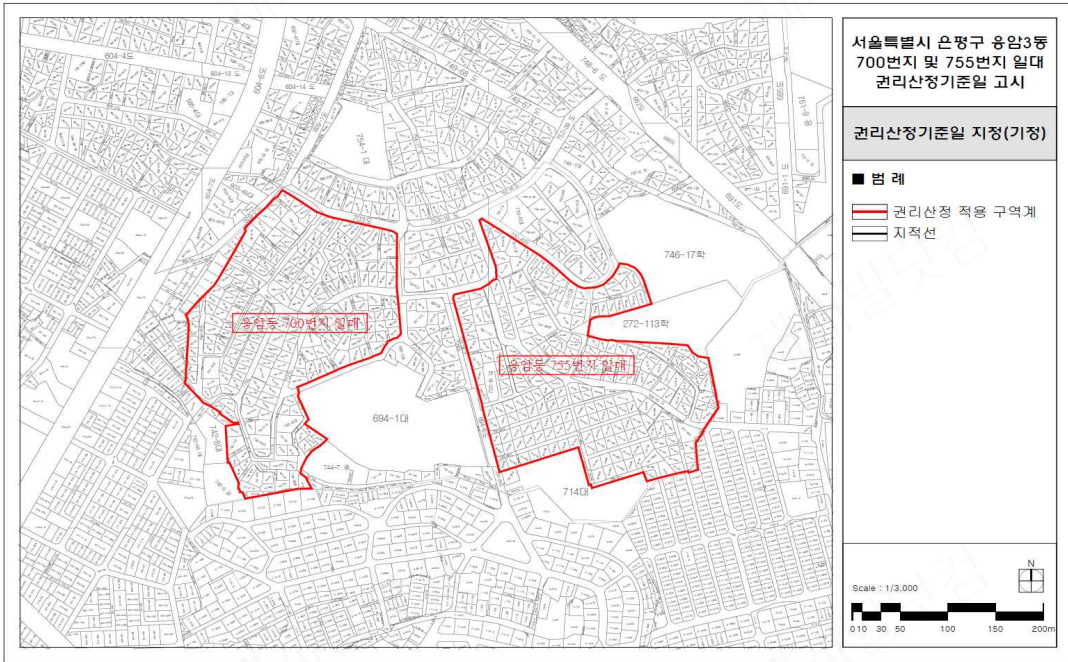
## 5. 관계도면 : 붙임참조

## 6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(주거환경개선과 02-2133 -7271) 및 은평구 주택과(02-351-735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※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, 건축물의 신축,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
- ※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■ 관계도면

-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구역
- － 기정



－ 변경

